

의안 번호	21
----------	----

2026. 7.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대신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27일 최초 설치되어 운용 중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임.(안 제9조)

2.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5. 29.~6.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창원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26. 3. 27.) 결과: 원안 가결

6) 현행 조례: 붙임 3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31년 12월 31일</u>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⑤ (생략)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 서류 또는 승인 서류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일정과 납부 방법 등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납기 시작일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②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③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삭제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기금을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 되도록 예치·관리해야 하며,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
-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및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부칙 생략>